

환 · 경 · 관 · 련 · 질 · 의 · 응 · 답

TMS설치 건



당사는 TMS부착 대상입니다.

측정대상은 HCL이고 특별재해대책지역
이라서 허용기준은 2ppm인데 최대배출허
용기준이 3배인 6ppm에 대한 형식 승인된
장비가 없는데 형식 승인된 10ppm장비를 설치해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6ppm에 대한 형식 승인된 장비가 있는지 알
려주세요.



현재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범위를 배
출허용기준의 1.2배 내지 3배 이내로 규
정하고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및
수도권 배출총량제 시행 등에 따라 측정
범위 상향조정이 불가피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정안은 3월말에 고시할 예정
입니다. 참고로, 배출허용기준이 5ppm 이하인 경우는 측
정범위를 5배 내지 10배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
안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염성폐기물 태그 사용에 대하여



환경업무 담당자로서 감염성폐기물의
RFID 시행에 앞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1. 태그 발행기로 태그 발행시 발생 에러
가 30%이며 한번 에러시 요구한 태그가 정
상 발행될 때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에러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 운반업체가 발행하는 방법 또는 전용용기에 부착하여 합
격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게요?

2. 태그를 부착시 골판지 5L용, 손상성 1L~2L 용기에도
부착해야 하는지요?

* 작은 용기의 전용기는 큰 용기에 담아 태그하나로 처리
함이 어떨는지요?



귀하께서 건의하신 태그 발행 시 에러
가 발생할 경우 자동 체크가 되어 지고 있
으며, 작은 용기를 큰 용기에 담아 태그
하나로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고려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색등급 조정시점에 관하여



통합지도점검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서요. 통합지도점검규정 별표3에 적색등급
기준 비교 2)에 사업장등급은 매년 12월 31
일을 기준으로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
여 1년마다 재조정한다. 되어있습니다.

만약 A라는 폐수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2007년
도 1월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동년 3
월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적색등급 기
준표 공통사항에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2회 이상 초과하였으
므로 적색등급으로 구분을 하여야하나 적용시점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2008년도부터 적색등급으로 조
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2회 위반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곧바
로 적색등급으로 적용을 하는지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
합지도점검규정(2006.12.20)」제6조 규정
에 의한 정기지도·점검 대상업소의 등급
조정은 같은 규정 [별표3]비교에 따라 매
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
마다 재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사업장의 적색등급 적용은 최근 2년간 배
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위반한 날짜기준이 아
닌 당해연도의 12월31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서 나오는 소각물 처리 건



아스콘 제조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폐아스콘, 페콘크리트)을 하는 업체로서 그동안 건설폐기물은 파쇄, 분리후 재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 건설폐기물에 건설혼합폐기물까지 처리계약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1. 건설혼합폐기물을 가져와서 파쇄 및 분리후 폐아스콘 또는 페콘크리트는 재사용을 하나 여기에서 나오는 폐합성수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소각업체에 위탁 처리를 해야 한다는데 그럼 사업장폐기물로 배출자신고 및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10톤/년 이하 예상됨.)

질의2. cwms(건설폐기물관리시스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사업장폐기물도 시스템 가입해야 하는지요?(cwms에 혼합폐기물처리방법중 위탁처리 업소명 기재가 있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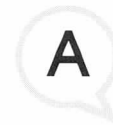
변경사유 대상 유무판단?



현재 대기배출시설중 건조시설의 연료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연료비절감을 위해 정제유로 대신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경유 황함량은 0.1%이고 정제유는 정제유 해당요건에 합당하는 연료일 때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산정변경신고를 다시 산정하여야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배출시설(건조시설)의 간접열원으로 경유를 연소하는 열원으로 건조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연소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소시설의 연료를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정제연료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대기배출사업장의 종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발생량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한하여 산정하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연소시설의 변경은 종산정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부착대상 여부



비금속광물제조시설 중 석회 소성로의 TMS 부착대상 기준은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입방미터이상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실제 배기가스량이 온도 150도 조건에서 시간당 30,000입방미터일 경우 표준입방미터로 환산 적용하면 시간당 19,362표준입방미터로 산출되는데 이 경우 TMS 부착대상인지 여부

2. 부착대상시설의 용량은 방지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구별로 산정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방지시설 용량이 시간당 25,000표준입방미터인 시설이 2기가 설치되어 있고 각각 별도의 배출구로 배출되는 경우 TMS 부착대상여부

- 배출구별 용량으로 판단하면 각각 시간당25,000표준입방미터가 되어 TMS 부착기준인 시간당3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기준에 용량이 미달함.

- 방지시설용량을 합산하면 시간당50,000표준입방미터가 되어 TMS 부착기준인 시간당 30,000표준입방미터이상인 시설에 해당되며 부착대상이 된다면 각각의 배출구에 TMS 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두개의 배출구를 하나의 배출 구로 묶어 TMS를 1기만 부착하여도 되는지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3 항 별표 2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관련조항의 부착

대상 시설의 배출가스량은 표준입방미터로 환산한 값을 의미함으로 시간당 19,326 표준입방미터라면 굴뚝자동측 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란의 제1호의 규 정에 의거 부착대상방지시설의 용량은 배출시설 설치허 가증 또는 설치신고필증의 방지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 며, 배출구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나의 배출시설에서 2개의 방지시설로 분산하여 배 출할 경우 2개 방지시설의 합한 배출가스량을 산정하여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이면 굴 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배출시설에 서 하나의 방지시설로 연결되어 방지시설 용량이 시간당 30,000표준입방미터 이하이면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대상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4항 기계적 처리시설중 압축, 파쇄, 분쇄, 절단, 용융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은 신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에 압축시설은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력 10마력 미만이고 1일 처

리능력 100톤 미만인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대상인지 요? 아닌지요?



동력 10마력 미만의 압축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산업폐기물 법적 준수사항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일반폐기물처리 시 시행규칙 제9조의3(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의 확인 등)을 준수하지 아니해도 되는지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사업 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이 아닌 사업장 에서 일반폐기물 처리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의한 수탁처리 능력 확인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수탁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 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인지 또는 재활용신고를 한 자인지 여부 등은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중 배출시설에 관한 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 부령 제227호.07.1.31)된 내용중 별표 3의 2(중전의 별표3)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동표 제8호 가목을 삭제하며, 동표 제11호 가목중 “습점시설, 건조시설·침향시설”을 “건조 시설”로 하고, 동호 나목중 “권련시설, 권취·포장시설”을 “포장시설”로 하며, 동표 제12호 가목중 “증자시설(훈증시설 을 포함한다), 자숙시설, 발효시설, 증류시설, 산·알카리처리

시설”을 “산·알카리처리시설”로 한다고 하는데

1. “습점시설, 건조시설·침향시설”을 “건조시설”로 한다고 하면 건조시설이 습점시설, 침향시설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습점시설, 침향시설이 삭제되고 건조시설만 배출시설로 보는 것인지 알려주세요.(동호 나목중 권련시설, 권취시설이 포장시설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 삭제되고 포장시설만 배출시설로 보는 것인지와 동표 제12호가목도 같이...)

2. 만약 삭제된다면 기존의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신고필증이나 허가증에서 삭제 시켜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2007.1.31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중전의 별표3) 제11호가목의 “습점시설, 건조시설·침향시설”을 “건조시설”로 한다는 의미는 습점시설, 침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삭제하고 건조시설만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을 말하며, 이하의 경우도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 2007년 1월 31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중전의 별표3)의 규정에서 삭제 또는 추가되는 시설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9월 30일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허가(신고)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서 삭제하면 될 것입니다.

매립쓰레기 운반 및 선별, 처리에 관한 사항

Q 저희는 택지개발지구에 접속되는 도로를 확포장 공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택지개발지구와 발주처는 동일하며, 택지지구와 도로현장으로 분리 발주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주소도 동일함:00동, 00동, 00동 일원)

현재 택지현장에서는 과거에 불법으로 매립된 쓰레기(토사가 대부분) 다량으로 발견되어 현장내 선별기를 설치하여 선별후 폐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토사는 성토하고 있고, 폐기물은 적법하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도로현장에서도 동일한 매립쓰레기가 일부 발견 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중에 있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매립쓰레기 선별을 위한 선별기를 도로공사구간내 설치가 어려워 택지개발현장내에 선별기를 설치하여 매립쓰레기를 운반후 선별이 가능한지?

2) 택지개발현장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택지개발지구와 계약된 업체의 선별기를 이용하여 별도의 계약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선별후 발생된 폐기물 또한 택지현장의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3) 또한 선별후 폐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토사는 택지현장에서 도로현장으로 운반하여 성토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 택지개발과 도로확포장공사가 동일사업이고 연결되어 있을 경우 도로공사시 굴착한 매립폐기물을 택지개발현장으로 운반하여 선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매립폐기물의 선별은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합니다.

- 선별후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또는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으며, 선별후 폐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토사는 도로현장으로 운반하여 성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환경부홈페이지 민원마당 코너에서 발췌한 내용임]